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5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최은석 · 권영세 · 진종오
장동혁 · 이양수 · 최보운
배준영 · 임이자 · 김승수
추경호 · 이종배 · 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 국내생산 기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제도는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이를 통해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함.

아울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부품·소재·장비 등을 공급하는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2. 철강 관련 재화
 3.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재화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장비 중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재·장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별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이 제1항 각 호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 제1항 각 호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 일부에 상당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차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판매수량 및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판매수량,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 차감할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그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재화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재화에 대한 생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에 따른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u> <u>조세특례</u>
<u><신 설></u>	<u>제100조의35(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u> <u>2. 철강 관련 재화</u> <u>3.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u>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
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재화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장비 중 내국인
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
소재·장비의 비중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내국
인의 해당 과세연도별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
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

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이 제1항 각 호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 제1항 각 호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 일부에 상당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차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판매수량 및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재화의 판매수량,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 차감할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그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재화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재화에 대한 생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외로 이전하는

	<u>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u>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생략) <u><신설></u>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에 따른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u>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u>

는 부분과,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
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
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